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징계 등의 사유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시효 특례 신설〉
■ 이견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47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견태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5.
3. 회부연월일 : 2024. 8.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징계 등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 사건을 살펴보면, 안동완 검사의 보복 기소 시점은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 기각 판결이 2016년, 대법원에서의 공소 기각 판결의 확정이 2021년이므로, 안동완 검사는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의 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

위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법원의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시효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 등 사유 발생의 여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등의 시효가 지나

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징계 등의 시효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 등의 시효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 등”)의 사유 발생 여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등의 시효가 지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징계 등의 시효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징계 등의 시효가 만료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u>기간</u> 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 ----- ----- <u>기간</u> <u>간(이하 이 조에서 “징계 등의 시효”라 한다)</u>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u>제1항의 기간이</u>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u>제1항의 기간은</u>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② ----- ----- <u>징계 등의 시효가</u> ----- ----- ----- <u>징계 등의 시효는</u> ----- ----- -----.

현행	개정안
<u><신 설></u> <u>③ (생 략)</u>	<u>③ 징계 등 사유 발생의 여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등의 시효가 지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징계 등의 시효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 등의 시효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2. 검토의견

현행법 제83조의2제1항은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성비위의 경우 10년, 금전 비위의 경우 5년, 그 밖의 비위의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그리고, 현행법 제83조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제1항),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③ (생략)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익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⑤ (생략)

제83조의2제2항³⁾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원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등의 시효가 경과하거나 잔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징계 등 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시효 연장의 특례를 법원의 재판과 관련성이 있는 징계 등 사건(“징계 등 사유 발생의 여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도 도입하여 징계 등 시효의 경과로 인해 비위공직자를 징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징계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의 측면에서 볼 때,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시효가 연장되는 징계 등 사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징계 등 사유 발생의 여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은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등의 시효가 연장되는 특례 규정의 요건으로서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봄.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는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생략)

②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생략)

를 진행하지 않거나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 되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는 한편,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려는 데 있음.

이렇게 볼 때, 법원의 재판을 이유로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전제되지 않은 채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불명확한 요건에 따라 시효가 연장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은 징계 등과 관련하여 시효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봄.⁴⁾

또한, 현행법 제83조제3항⁵⁾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지와 같이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 개정안과 같은 특례 규정을 두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이미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여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징계절

4) 감사원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한 징계 등 시효 연장의 특례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전제로 하여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조사개시 통보 또는 수사개시 통보를 하고 이에 따라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징계 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5)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인사혁신처는 확정판결로 징계 등 사유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시효 특례를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되는 측면이 있으나,

공무원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과 법적 안정성 및 공무원의 신분 보호 측면을 신중하게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아울러, 금고 이상의 형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징계 처분 없이도 당연퇴직 처리되는 등 재판이 징계시효보다 길어지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
